#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은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565

발의연월일: 2024. 9. 3.

발 의 자: 조은희·서범수·이인선

고동진 · 김기현 · 김소희

최수진 • 박정하 • 주진우

김상욱 • 한지아 • 이달희

김용태 · 박준태 · 곽규택

이만희 • 김미애 • 신정훈

유상범 의원(19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음란물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이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통해 유포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파장이 지속되고 있음.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소셜미디어(SNS)에올라온 사진을 무단 도용하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동급생 등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장난처럼 소비하면서 심각성을 더하고있음. 실제로 작년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 피의자 4명 중 3명(75.8%)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 기술 발달이 범죄의 저연령화로이어지면서 사회적 경고등이 켜지고 있음.

현행법은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상 아동·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해서는 신분비공개·위장수사의 특례를 허 용하고 있으나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례가 없어 적극적인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촬영물·허위영상물 등 관련 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수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,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의4 신설 및 제50조제1항제1호 신설)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조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354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 므로,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 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## 법률 제 호

##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4조의4(촬영물·허위영상물 등 관련 범죄의 수사 특례)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(이하 "촬영물·허위영상물 등 관련 범죄"라 한다)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(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)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(이하 "신분비공개수사"라 한다)할 수 있다.
  - ② 사법경찰관리는 촬영물·허위영상물 등 관련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,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(이하 "신분위장수사"라 한다)를할 수 있다.
  - 1.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,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, 변경 또는 행사
  - 2.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ㆍ거래

- 3. 제14조제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, 제14조의2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의 소지, 판매 또는 광고
- ③ 제1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④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의3부터 제25조의10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디지털 성범죄"는 "촬영물·허위영상물 등 관련 범죄"로, "제25조의2"는 "제14조의4"로 본다.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1. 제14조의4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의8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다)를 할 수 있다.

- 1.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,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, 변경 또는 행사
- 2.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 거래
- 3. 제14조제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 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 다), 제14조의2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의 소지, 판매 또 는 광고
- ③ 제1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.
- ④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 위장수사에 대하여 이 법에 규 정한 사항 외에는 「아동・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부터 제25조의10까지 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디지털 성범죄"는 "촬영물ㆍ허위영상 물 등 관련 범죄"로, "제25조의 2"는 "제14조의4"로 본다.

제50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 제50조(벌칙) ① -----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

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<신 설>

<u>1.</u>·<u>2.</u> (생 략)

② ~ ⑤ (생 략)

\_\_\_\_\_

-.

- 1. 제14조의4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의8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
- 2.·3. (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)
- ② ~ ⑤ (현행과 같음)